

# 경기원 자격 및 교육규정

제정 2020. 11. 2.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경기·통계원(이하 “경기원”이라 한다.)의 자격, 교육, 양성 및 배정과 관리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협회 경기원, 경기·심판위원회 등 경기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 제 2 장 경기원 구분 및 교육 등

**제3조(경기원의 정의)** 경기원이라 함은 협회가 발행하는 경기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 및 산하, 시·도농구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협력단체에서 경기원 및 통계원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경기원의 등록 및 활동)** ① 자격증이 부여된 경기원은 해당 활동을 위해서 협회에 등록을 필해야 하며, 등록양식, 절차 등 등록에 대한 세칙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경기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협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강습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에서 경기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해당국가협회의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부여되고 당해 연도 경기원으로 등록, 활동할 수 있다.

④ 경기원의 활동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제5조(경기원의 구분)** 경기원은 협회 발급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1. 1급 경기원
2. 2급 경기원
3. 3급 경기원

**제6조(경기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경기원 교육 및 자격부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협회에 있다.

② 협회는 자체교육 또는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3급 경기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17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② 3급 경기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정시력 좌우 0.7 이상으로 색맹·색약이 아닌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3급 경기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일간(혹은 15시간 이상의 경기교육 수강)의 교육기간 수료 후 필기시험(경기,통계) 60점 이상, 실기평가 60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④ 3급 경기원 활동영역은 별표 4과 같다.

**제8조(2급 경기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2급 경기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3급 경기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신인경기원교실 이수자.
2. 교정시력 좌우 0.7 이상으로 색맹·색약이 아닌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② 2급 경기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2급 필기시험(경기, 통계) 및 실기평가에서 경기시험 70점 이상, 순발력테스트(FIBA 기준 5초 이내)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한다.

③ 2급 경기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2급 경기원 활동영역은 별표 4과 같다.

**제9조(1급 경기원 교육 및 자격부여)** ① 1급 경기·통계원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급 경기원으로 2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특수강습회를 이수한 자로서 경기·심판위원회의 추천을 받았거나, 최근 2년간 협회에서 인정한 지역

및 전국규모대회(생활체육 포함) 일정 중 50일 이상을 경기원으로 활동한 자

2. 종합병원 등의 건강검진(신체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② 1급 경기원자격증은 전항의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 중에서 1급 필기시험(경기, 통계) 및 실기평가에서 경기 시험 80점 이상, 순발력테스트(FIBA 기준 5초 이내)를 통과한 자
- ③ 1급 경기원 승급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1급 경기원 활동영역은 별표 4과 같다.

**제10조(경기원의 배정)** ① 경기·심판위원회 또는 경기·심판위원장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경기원 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최근 1년 동안 배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보수교육 재이수 후 배정받아 활동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경우 경기·심판위원장 승인으로 경기원자격별 활동영역(별표 4)에 각급별 제한없이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기원의 의무)** 경기원은 경기운영 및 기록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경기원으로서의 품위와 도덕성을 유지할 의무
2. 경기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
3. 경기 전후 심판이나 판정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

**제12조(경기원의 활동정지)** 활동정지라 함은 경기원 활동의 일시적인 정지를 말하며 경기·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거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조(경기원의 상벌)** 경기·심판위원회는 경기원과 경기·통계강사 및 기타 경기원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 협회, 시·도농구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 협력단체에 포상 또는 징계를 건의하고, 경기원 배정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징계건의 대상
- 가. 경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자

나. 승부를 조작하였거나 조작을 교사한 자

2. 배정금지 대상

가. 전항의 징계대상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자(영구 배정금지)

나. 경기규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다. 경기·심판위원회의 경기배정 및 공지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 자

라. 기타 타인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자

**제14조(경기원의 자격소멸)** 자격소멸이라 함은 징계 등에 의한 자격증의 박탈, 본인의 자격증 반납, 또는 개인적인 유고 등으로 경기원의 자격이 영구 소멸되는 것을 말하며, 자격의 소멸은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경기원의 수당)** 경기원의 수당은 경기·심판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협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6 조(경기원의 보호)** 경기원은 경기원 활동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장 내, 외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1. 경기장 도착 시부터 출발시간까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2. 대회 및 경기를 준비하는 시점부터 경기를 진행하는 시간을 포함해 최종 마무리까지 경기원의 안전과 경기·통계석 및 경기·통계 물품과 장비들이 보호 받을 권리
3. 경기단체 또는 대회 주최기관이 제기한 징계 및 징계 해제 심사 소청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언 및 항변 할 권리

**제17조(보험가입)** 경기원의 계약 기간 중 원활한 활동 및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협회는 경기원 상해보험(스포츠안전재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신인경기원교실 운영)** 협회는 40세 이하의 신인 경기원 양성을 위해 신인경기원교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제반규칙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경기·통계강사의 자격요건 및 승인)** 경기·통계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석강사: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자

가. FIBA, FIBA ASIA 경기·통계강사로 최근 1년 이내 강사로서 활동  
경력이 인정된 자

나. 협회 경기·통계강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2. 초빙강사: 협회가 추천한 자로서 1급 경기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또는 국제경기·통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제20조(승급시험)** 승급시험은 전국중앙강습회에서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1조(자격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① 각급 경기원의 자격시험 불합격자  
는 시험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재응시 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경기, 통계) 불합격자는 교육과정부터 재수강해야 한다.

**제22조(외국기관 발급 자격증)** FIBA, FIBA ASIA 또는 각국 농구협회  
주관의 경기원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발급 받은 공인자격증은 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수료 및 자격증 소지자 공지)** 협회의 경기원교육 수료 및 자격증  
보유 현황은 연중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무자격 경기원의 활동금지)** 협회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  
는 경기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25조(경기원교육 평가와 계획수립)** 협회는 당해 연도 경기원 교육과정에  
관한 평가분석을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당해 연도 경기원 교육과정 계획  
은 전년도 12월까지 협회 이사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 제 3 장 보수교육

**제26조(정의)** 보수교육이라 함은 “협회” 자격증을 소지한 경기원의 자질향  
상 및 보강을 위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사후 교육을 의미한다.

**제27조(목적)** 보수교육은 다음의 목적으로 실시한다.

1. 경기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당기간 경기원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  
하는 경기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
2. 현직 경기원의 능력 개선과 보강

**제28조(대상)** 보수교육은 협회의 경기자격증을 소지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9조(교육기간)** ① 보수교육은 1일~3일간, 총 15시간~2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② 매년 12월에 실시한 보수교육은 다음연도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교육내용)** 보수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구규칙 이론과 실제의 재교육
2. 경기규칙의 적용과 실제
3. 국제경기의 모델분석
4. 경기원의 자질 향상에 필요한 소양교육
5. 기타 경기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보수교육의 권한 및 위임)** ① 보수교육의 전반적인 권한은 협회에 있다.

② 3급 경기원 및 2급 경기원 보수교육은 연 1회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강사는 협회가 지원한다.

③ 3급 경기원 및 2급 경기원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타 기관은 교육계획과 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2조(의무수강 및 미필자에 대한 제재)** ① 자격증을 가진 모든 경기원은 자격 취득년도로부터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시간은 15시간~20시간으로 한다.

② 전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원 자격이 당연 정지되며, 보수교육 이수 이후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33조(교육면제대상)** 보수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을 이행한 경기원은 심의 후 보수교육을 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및 해당서류 사본을 필히 협회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1. FIBA, FIBA ASIA, 또는 각국 농구협회가 주최한 경기원 교육과정 수료자
2. 타 기관이 주최한 경기원 교육과정 수료자
3. 심판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민국농구협회가 주최하는 당해 연도 중앙강

습회 이수자

## 부 칙(2020.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2020.11. 2.)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경기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며 경기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다.)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협회, 시도농구단체, 전국규모연맹체 및 협력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는 1급, 2년미만으로 활동한 자는 2급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실기시험 면제) 합격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별도기준을 정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수강료 면제)

**별표 1**

□ 수강료(교재대 포함), 응시료 및 경기자격증 발급비 (재발급 시 비용 동일)

경기자격증	관련비용	금 액
3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10,000원
	발급비	20,000원
2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30,000원
	발급비	30,000원
1급	수강료	50,000원 이상
	응시료	50,000원
	발급비	50,000원
신인경기원교실 (2급)	수강료	200,000원 이상
	응시료	30,000원
	발급비	30,000원

**별표 2**

□ 시.도지부 경기.심판강습회 강사 경비 지급기준

구 분		주 강사	보조강사	비고
강사료	1일 4시간 이상	200,000원	150,000원	
	1일 4시간 미만	100,000원	80,000원	
여 비	교통비	· 열차이용 : KTX · 고속버스 : 우등 · 개인차량 : 거리계산 주유비		
	숙박비	· 2인 1실 60,000원		실비집행
	식비	· 1식 10,000원		

※ 상기 경비는 주관 시.도지부에서 수강료 중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구성 : 심판부문 -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2명  
경기부문 - 주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별표 3**

□ 협회 주관 경기.심판강습회 강사료 및 경비 지급기준

구 분		주강사	보조강사	비 고
강사료		25,000원/1시간	18,750원/1시간	
여 비 (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교통비	· 열차이용 : KTX · 고속버스 : 우등 · 개인차량 : 거리계산 주유비		실비집행
	숙박비	· 2인 1실 60,000원		
	식비	· 1식 10,000원		



별표 4

□ 경기원 자격별 활동영역 (3X3대회포함)

자격구분	경기원 활동	비 고
1급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모든 경기 담당	
2급	전국규모 중·고대회 이하 경기 및 생활체육대회 모든 경기 담당	
3급	만 19세 이상으로 생활체육대회 모든 경기 담당	
※국제경기·통계원 자격증 소지자: 전국규모(생활체육 포함)대회 및 국제대회 경기 담당		